

(第12回－文化教育第3次)

<p>服裝, 勤務時間, 休暇等에 關한 事項等은 教育規則에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p> <p>改正條例案은 첨부해 드린 改正案을 參照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改正根據는 地方自治法 第15條 및 參考로 現行 條例를 添附해 드렸습니다.</p> <p>이상으로 서울特別市教育監所屬公務員服務條例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委員長 李詰鎬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가 있겠습니다.</p> <p>○專門委員 金長虎 지금부터 서울特別市教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p> <p>.....</p> <p>(報 告)</p> <p>1. 제안경위</p> <p>본 조례(안)은 1994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4일 소관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p> <p>2. 제안사유</p> <p>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와 더불어 공무원의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의무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관한 제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출장공무원의 근무자세·근무복장 등 경미한 사항과 근무시간 휴가 등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에 연계되어 개정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며, 또한 공직자 행동률에 관한 규정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공무원복무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교육감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제규정을 교육자치의 취지와 설정에 맞게 정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p> <p>3.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봉사의무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함(안 제4조). ○ 공무원의 창의와 성실 의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 행동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출장공무원의 근무자세, 공무원의 근무복장·근무시간·휴가 등에 관한 사항등은 교육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p>4. 근거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5조 <p>5. 겸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안)은 전부 개정으로 본문 1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제2조(적용범위)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제4조(봉사)에서는 봉사의무를 보다 분명히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 제1조(목적), 제3조(복무신서), 제5조(친절), 제6조(창의·성실), 제7조(법령준수), 제8조(겸임근무), 제9조(파견근무), 제10조(겸직허가), 제11조(해직공무원의 연장근무)는 현행 조례 제1조(목적), 제2조(복무신서), 제4조(친절·공정), 제2조의2(책임완수), 제3조(근무기강 확립), 제7조의2(겸임근무), 제7조의4(파견근무), 제24조(겸직허가), 제8조(해직된공무원의 근무)에서 제목변경 및 문구수정을 한 것이며, ○ 현행조례 제3조 제2항의 공직자 행동률에 관한 사항과 제5조(근검·절약)는 조례에 규정하기에는 불합리하여 삭제한 것이고, ○ 현행조례 제6조(당직근무), 제7조(출장공무원), 제8조의2(복장등), 제9조(근무시간), 제10조(근무시간의 변경), 제11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제13조(휴가의 종류), 제14조(연가일수),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7조(연가일수에의 산입), 제18조(병가), 제19조(병가), 제20조(특별 휴가), 제21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제23조(공무의 국외여행)는 교육규칙으로 규정하려고 본 조례(안)에서는 삭제하였음. ○ 또한 본 조례(안) 제12조(위임)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

<p>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p> <p>○ 본 조례(안) 제12조의 위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로 개별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나, -현행 조례 제6조 내지 제7조, 제8조의 2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등과 관계가 없는 행정규칙인 성격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소속공무원 간의 특별권력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에서는 개괄적인 위임은 가능하다고 생각됨.</p> <p>○ 그러나 본 조례(안)에서 개괄적인 위임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부적당하다고 보이는바,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밀도있게 검토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p>.....</p> <p>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 李詰鎬 그러면 本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李永輔委員, 말씀해 주세요.</p> <p>○李永輔委員 李永輔委員입니다.</p> <p>서울特別市教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公務員 服務에 관하여 包括的으로 委任을 했으나 市民의 權利 義務와 關係가 없는 行政規則의 性格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그 所屬公務員間に 特別權力關係에 관한 그런 事項으로써 그 委任을 概括的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企劃室長께서 이것에 대해서 答辯해 주세요.</p> <p>○企劃管理室長 金鎮成 企劃管理室長 金鎮成입니다.</p> <p>지금 李永輔委員님께서는 公務員의 服務에 관하여 包括的으로 委任되어 있는데 이것은 市民의 權利義務와 關係 없는 行政規則의</p>	<p>性格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内部的인 問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概括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意見이 어떠느냐고 물으셨습니다.</p> <p>委員님께서 指摘해 주신 바와 같이 教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의 委任을 받아 教育規則으로 정하고자 하는 事項이 公務員의 勤務時間, 休暇, 出張公務員의 勤務姿勢 등 行政內部事項에 관한 것으로써 이는 住民의 權利義務와 直接 關聯이 없고 다만 特別權力關係內에 内部關係事項에 관한 事項으로써 이러한 事項에 대한 委任은 自治立法機關인 議會의 同意를 얻는다면 包括委任도 可能하다고 저희는 判斷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p> <p>그러나 委任形式에 있어서 委員님께서 지금 指摘하신 바와 같이 지금 問題가 있다면 概括委任하는 問題도 저희는 别 問題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公務員의 勤務時間, 休暇等에 관하여 具體的인 事項은 教育規則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저희 原案대로 委任하여 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저희 公務員 服務에 效率的인 管理에 큰 도움이 될까 생각이 됩니다.</p> <p>이 점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p> <p>○李永輔委員 理解하는 것이 問題가 아니고 包括的으로 委任을 했잖아요?</p> <p>○企劃管理室長 金鎮成 네.</p> <p>○李永輔委員 그런데 지금 答辯은 概括的으로 委任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兩論의인 答辯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答辯이 어디 있어요?</p> <p>○企劃管理室長 金鎮成 그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住民하고 直接 關係가 없는 事項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包括委任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李委員님이 指摘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너무 包括的인 것보다는 概括的으로 委任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p> <p>○李永輔委員 아니, 글쎄 包括的으로 委任을 해 놓고 지금 그것에 대한 質疑가 있으니까</p>
--	---